##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3

2017. 9.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1일, 신건택의원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2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9.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신건택 의원)

### 1. 제안이유

○ 현행「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이들의 역할은 임금·근로시간·유급휴가·산업안전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맡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에 관한 업무 등 비정규직 문제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점검, 퇴직급여까지 이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한층 넓어지고 있으며 노동문화에 대해다양하고 전문적인 근로감독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는실정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해야하는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은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실 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지고 있어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떠안아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 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와 노 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역 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울시와 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노동조사관 제도 신설

- 정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 업종에 걸쳐 근로기준법, 산업 안 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위반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전년도 기준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1,282명으로 전국의 근로감독대상을 관리·감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신규 근로 감독관의 경우 선발 후 단 4주간의 교육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과중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 자체적으로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고자, 시는 2018년부터 두 명의 노동조사관을 선발하여 시와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시와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사관의 노동관련 법률에 관한 조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대상 범위	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67조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교통정책과 9. 서울교통공사 지도감독 10.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제7항 보도환경개선과 4.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 도시농업과 1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 주택정책과 15.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7항 녹색에너지과 14. 서울에너지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할 수 있다.
4.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당초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및 복지시설까지 노동조사관의 조사대상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을 고려하였으나해당 기관의 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시의지도감독 권한이 명확한 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으로 조사대상범위를 한정하였음.
- 현재 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은 총 20개, 민간위탁기관은 총 252개소, 350개 사무로 단 두 명의 노동조사관으로 이들 기관 및 근로현장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조사의 경우 각각의 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노동조사관의 업무량이 방대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상 노동조사관은 최대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있음.
- 한편, 현재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시에서 해당기관에 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도·점 검시에도 노동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어, 노동조사관을 신 설할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노동조사관의 역할은 조사 후 결과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까지 로 제한되어 있어, 특히 민간의 위탁기관들이 조사결과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어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우려되며, 단순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 로는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노동조사관은 노동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노동전문가로 선발해야 할 것이며, 선발된 노동조사관은 급변하는 노동현장과 관련 정보취득 을 위해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필요 할 것으로 생각됨.

###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 노동조사관제도를 신설하고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와 그 산하기관들의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시정권고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 또한 노동조사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와 산하기관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조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국의 다양한 기관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기대됨.
- 시는 향후 노동조사관의 업무 및 조사 대상기관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사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까지만을 가진 노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각 대상기관에서 반영·시정하도록 하기위한 시의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해보임.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V. 토론요지: 「없음」
-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신건택, 김영한,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현기, 남창진, 맹진영,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우미경, 유 용, 이명희, 이성희, 이혜경, 조상호, 주찬식,

최호정 의원(19명)

#### 1. 제안이유

현행「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의 역할은 임금·근로시간·유급휴가·산업안전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맡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에 관한 업무 등 비정규직 문제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점검, 퇴직급여까지 이에 따른 근로 감독관의 업무가 한층 넓어지고 있으며 노동문화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근로감독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해야하는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은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지고 있어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떠안아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조사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104조~10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 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b>제21조(노동조사관)</b>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
		(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u>사람</u>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
		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
		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
		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
		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노 동조사관) 채용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첚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나. 추계결과 = 1,396,295 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79.259 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임기제 6급 5명 채용 전제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증원 전제(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 제5호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발생 전제)
    - 연봉지급 하한액 기준
    - 연봉은 본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
    - 본봉은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3%) 반영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96,295 천원
  - 총비용 =  $\sum_{i=1}^{5} (노동조사관급여)i$

i = 비용추계 연차(2018년~2022년)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丁亚		(2016)	(2019)	(2020)	(2021)	(2022)	
세입	-	_	_	_	_	-	-
	소계(a)	_	-	-	-	-	_
	노동조사관	264 850	971 949	270 042	286 460	204 100	1,396,295
세출	급여(제27조)	204,000	211,042	213,043	200,400	234,100	1,000,200
	소계(b)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총 비용(b-a)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 ○ 연도별 총급여 내역

- 본봉은 인건비 상승률(3%) 적용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은 인건비 상승률 미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본봉	233,050	240,042	247,243	254,660	262,300	1,237,295
정액급식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직급보조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특정업무경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초과근무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합 계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 연간 총급여 : 노동조사관 연봉 × 5명
  - 264,850천원 = 52,970천원 × 5명
  - 1인당 연봉 : 본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경비 + 초과근 무수당
    - · 52,970천원 = 46,610천원 + 1,560천원 + 3,000천원 + 600천원 + 1,200천원
    - · 본봉(임기제 6급 하한액) : 46,610천원
    - · 정액급식비 : 130천원/월 × 12개월 = 1,560천원
    - · 직급보조비 : 250천원/월 × 12개월 = 3,000천원
    - · 특정업무경비 : 50천원/월 × 12개월 = 600천원
    - · 초과근무수당: 100천원/월 × 12개월 = 1,200천원
    -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자료 참조

#### - 연간 총급여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월	연간	인원	총급여
본봉		46,610	5	233,050
정액급식비	130	1,560	5	7,800
직급보조비	250	3,000	5	15,000
특정업무경비	50	600	5	3,000
초과근무수당	100	1,200	5	6,000
합계		52,970		264,85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28** 02-3705-1280

e-mail: intezer@seoul.go.kr